

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(설명자료)

I. 서론

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간 중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와 퇴직 후 축적된 자산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급 단계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태임.

○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오랜 관행과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일시금에 대한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퇴직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일시금 수령이 일반화되면 퇴직연금제도는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함.

■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II. 연금전환 정책과 필요성

1. 연금전환 정책

■ 정부(또는 연금기금위원회)가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연금전환을 의무화하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있으며 각각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.

○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적립금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를

제외하고 연금전환이 대원칙이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전가가 가능함.

- 연금전환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배제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어 높은 가격경쟁력 유지되는 장점이 존재함.
- 반면, 개인의 선택권 제한,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, 유연성 저하 등 단점도 존재함.

○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에서는 연금전환을 기본 값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연금 전환이 적용됨.

-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단계에서는 디폴트 옵션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.

2. 우리나라 현황

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모두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 정책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세제 측면에서도 연금전환보다는 일시금 선택이 더 유리한 상황임.

○ 퇴직 시점에서 가입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전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함.

○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 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하므로 연금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부재함.

-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함으로써 실효세율이 매우 낮는데 비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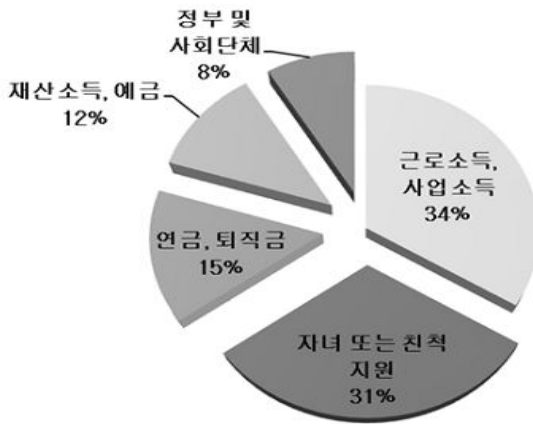
■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노후소득원 중 연금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.

○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적 이전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 소득 확보가 필요함.

– 노후소득원 중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.4%인데 비해 연금 소득은 14.7%에 불과함.

○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%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.

<그림 1>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(2009)



자료 : 통계청(2010), 『사회조사보고서』

3. 연금전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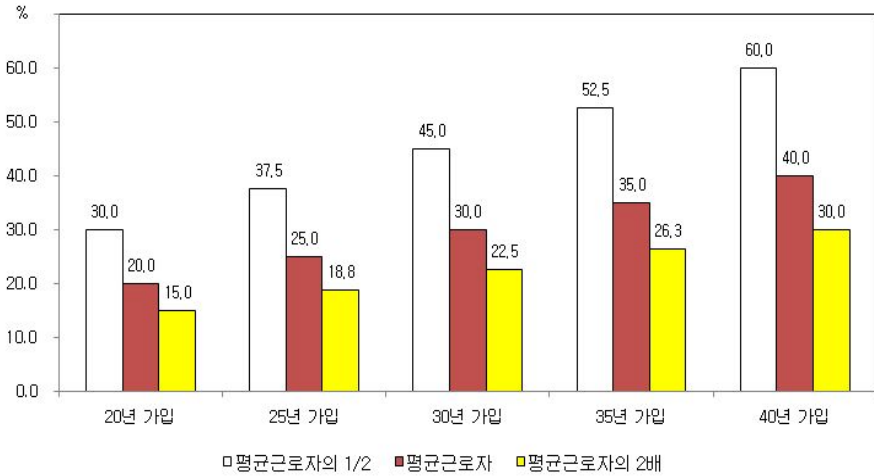
■ 1층인 국민연금제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불안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,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도 노후소득원으로서 상당히 불충분하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2007년 큰 폭의 급여 인하 조치로 인해 30년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의 30%에 불과한 상황임.

○ 급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2045년 경 적자 발생,

2060년 경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, 기금 고갈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23.9% 수준으로 급증이 예상됨.

<그림 2>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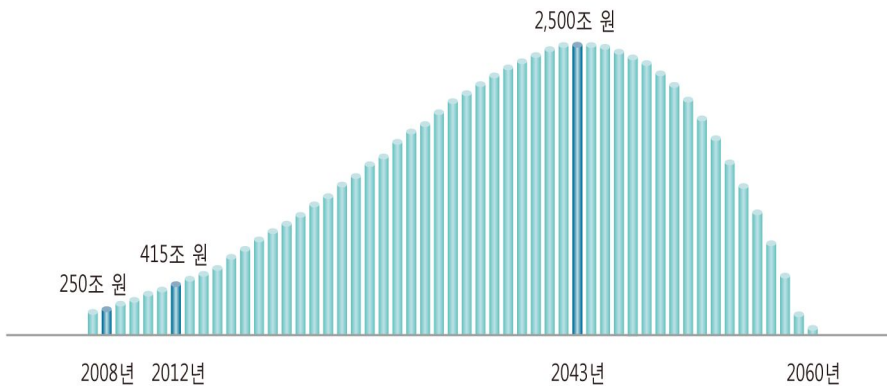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2028년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

2) 소득대체율=연금급여/가입기간 평균 소득

자료 : 문형표 편(2007), 『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(I)』, 한국개발연구원, 수정 작성.

<그림 3> 국민연금기금 재정 추계



자료 : 국민연금공단(<http://www.nps.or.kr>)

III.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

1. 연금전환 정책

■ 주요국에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(칠레, 영국)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(스위스, 미국 DB)을 활용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음.

○ 반면, 미국 DC 및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정부 정책이 없고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방식임.

2.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

■ 각국은 연금전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부분 일시금 허용, 프로그램인출 방식 허용, 기혼자에 대한 연생연금 적용 등 구체적인 지급옵션을 규제하고 있음.

○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 대체한 칠레에서는 부분 일시금을 허용하지 않고, 종신휘연금과 연생연금만 허용하는 등 엄격히 규제함.

○ 공적연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적립금의 25%까지 일시금을 허용하며 의무적인 연금전환 연령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인출 방식의 활용도 허용됨.

○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스위스에는 부분(전부) 일시금이 허용됨.

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전환 시 가격 규제를 하지 않지만, 스위스에서는 의무 부문에 대해 국가에서 높은 연금지급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음.

○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 부문과 이를 초과하는 부문으로 구분한 후 의무 부문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률을 7.2% 수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연금전환 유인을 제공함.

3. 가격 비교정보 제공

■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칠레와 영국에서는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.

- 칠레에서는 SCOMP 시스템을 통해 연금전환 관련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, 동 제도 도입 이후 연금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증대됨.
- 영국에서는 OMO 활용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,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들의 연금전환 관련 이해력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.

4. 세제 정책

■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한 과세 체계(EET)를 적용하고 있어 과표 상 누진세 대상에 속하는 일시금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.

- 영국에서는 일시금 허용 한도인 25%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EET에 비해 좀 더 관대한 EET 방식임.

5. 연금전환 수준

■ 연금전환 수준은 각국의 정책, 지급옵션에 대한 규제, 가격 규제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, 의무화 정책, 유리한 연금전환 조건 등이 수반되면 연금전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칠레, 영국에서는 연금전환 대상이 되는 적립금 100%가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함.
-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스위스에서는 연금지급률을 7.2%로 높게 제시하는데 힘입어 전체 적립금 중 80%가 연금으로 전환됨.
- 이에 비해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미국 DC, 호주에서는 연금전환 수준

이 10%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.

6.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

■ 가입자 입장에서 연금전환 시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는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는 연금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힘입어 스위스가 가장 높고,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칠레와 영국이 높은 수준임.

IV. 연금전환 정책 설계

1.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

■ 연금전환 정책에 따라 위험단체가 달리 형성될 것이므로 연금전환 시 가격 경쟁력도 달라질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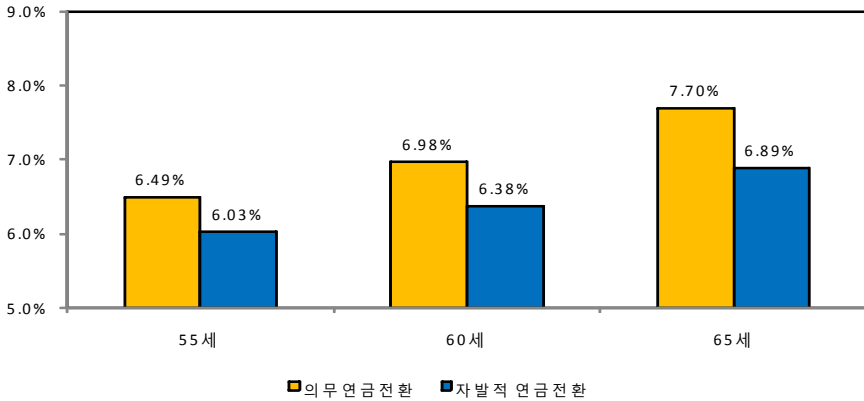
○ 현재와 같이 자발적 연금전환 시 제6회 개인연금사망률을 가진 위험단체가 형성될 것임.

○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사업장 종사자들이 연금을 구입하므로 생존·사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위험률 즉, 제6회 생존·사망률을 가진 위험단체가 형성된다고 가정함.

■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위험분산이 잘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형성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어 연금지급률이 상당 수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.

○ 남자 55세 0.46%p, 60세 0.60%p, 65세 0.81%p 높아지며 연금급여는 각각 7.6%, 9.4%, 11.8%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.

<그림 4>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



- 주 : 1)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은 계리적으로 공평한 가격산출을 가정함.
 2) 예정이율은 4.8%로 가정함.
 3) 연금지급률=(연금급여/가입금액)×100

■ 연금전환으로 인한 초과 소비(연금지급률-국고채수익률) 크기도 의무 연금전환정책을 시행하면 자발적 연금전환보다 0.46%p(55세 남자 기준)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.

○ 연령이 60세, 65세로 높아지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의 초과 소비 개선 크기도 각각 0.60%p, 0.81%p로 높아져 고연령에서 의무 연금전환 시 높은 소비 수준이 가능함.

■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시행 시 효과는 자발적 연금전환보다는 높지만 의무 연금전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.

2.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

■ 연금전환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.

○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연금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

는 부분 연금전환 방식,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특약, 고연령거치연금 등 전통형 연금상품이 갖고 있는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옵션 활용이 필요함.

■ 부분 연금전환 방식은 적립금 전체를 일시에 연금전환하는 것보다 금리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가입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주어 전부 전환에 따른 비가역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음.

○ 예를 들면, 적립금으로 5회에 걸쳐 일시납 즉시연금을 구입하고, 잔여 적립금은 개인 계정에서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함.

○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연금전환 여부 결정하는 등 유연성이 증대됨.

■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특약은 뮤추얼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보험의 보장 기능을 부가하였기 때문에 초과 수익과 하방리스크 보장이라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.

○ 투자 성과가 저조해서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증수수료를 납부한 대가로 사망 시점까지 일정 급여 인출이 가능함.

■ 고연령거치연금은 고연령에서 개시되는 장기 거치연금계약으로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장수리스크 전가가 가능하며, 잔여 적립금은 연금개시 전까지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음.

○ 일시에 대규모 적립금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고 연금개시 전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함.

3. 시사점

■ 개별 지급옵션은 투자수익률, 단순성, 수수료, 위험회피도 및 상속욕구 등

간 다양한 요인을 감안할 때 절대적 우위를 식별하기 어려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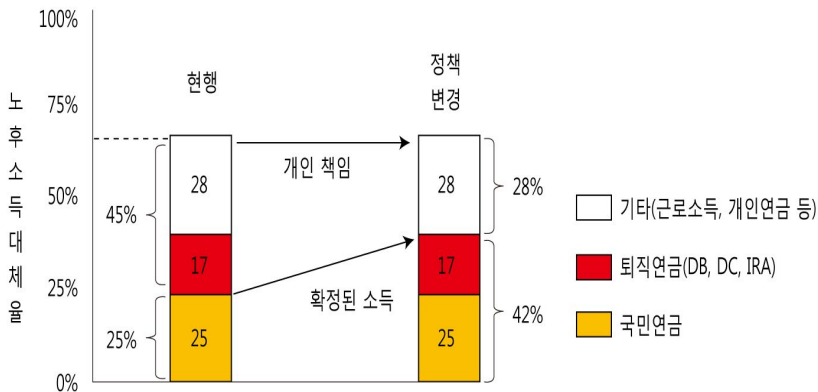
- 개인이 지급옵션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함.

V.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정책 제안

1. 기본 방향

-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연금전환을 유도하면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이 최대 42%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임(1층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25% + 2층 퇴직연금 17%).

<그림 5> 노후 소득대체율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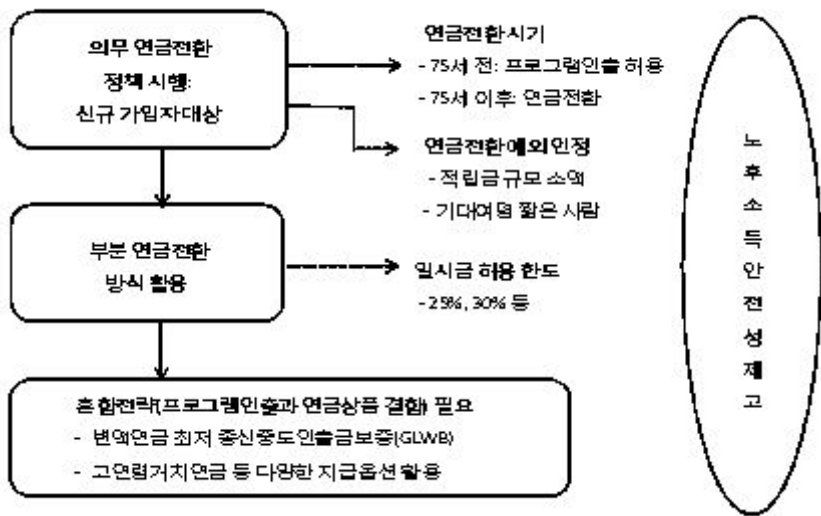
주 :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30년 남자 가입자의 DB 적립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, 연금지급률은 60세 남자 기준 6.98%를 사용함.

- 정부에서 연금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1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,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,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을 제안함.

■ 제1안으로 제시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연금전환의 대원칙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.

-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에게는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하고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함.
- 예외 조치로서 적립금 수준이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기대여명이 짧은 사람은 적용을 배제함.
- 전환 시기는 55~75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, 특정 연령 도달 시점까지는 재량적인 투자 허용하고 고연령(예: 70세, 75세, 80세)에 도달 시 잔여 적립금으로 연금을 구입함.

<그림 6> 제1안: 의무 연금전환 정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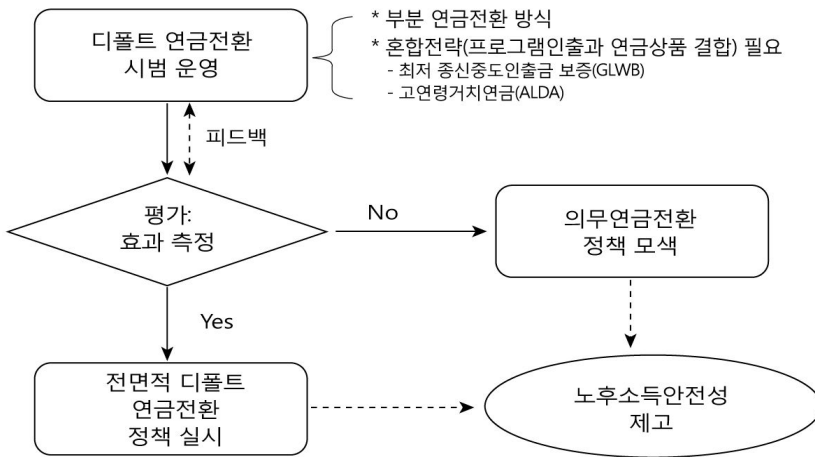
■ 제2안으로 제시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개인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반발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 도입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정책 효과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보다는 낮지만 현재와 같이 자발성에

일임할 경우보다는 개선될 것임.

-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장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적용함.
- 만약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 도입을 고려함.

<그림 7> 제2안: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



■ 제3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되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정책임.

- 의무화 또는 디폴트옵션과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방식에서 세제만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.
- 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 적용하여 일시금 수급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축소함.
-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(예: 비과세 확대, 면세, 매칭 펀드 등)을 부여함.

<표 1> 제3안: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

-
- 일시금과 연금에 대해 단일 세제 적용
 -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폐지
 - 퇴직소득세 유지 시, 연금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 대폭 확대
 - 연금소득(공적연금 포함)에 대한 면세기간 상향 조정
 - 퇴직연금제도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은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
 - 연금전환 적립금에 대해 매칭펀드(matching fund) 지원
-

VI. 요약 및 결론

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연금 전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시행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.

○ 일시금 허용 한도, 연금전환 연령, 예외 조치 요건, 개인들의 구체적인 선택 행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.